

# 「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1월 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1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허가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제52조의2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,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(관내에 위치한 건축사)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으로서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(안 제3조)
-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(안 제4조)
-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
-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(안 제7조)
- 미지급 및 환수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- 본 조례안은  
관련 건축법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,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 주요내용은  
안 제15조의6에서는 「건축법」 상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여  
**”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“**을  
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 
**”실내건축 검사 주기“**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 
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번으로 신설하며  
안 제15조제2항은  
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관내에 위치한 건축사에서  
**” 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**  
**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“**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
- 검토결과  
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며  
공정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1호 중 “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”을 “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,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 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는 「건축사법」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<u>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.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5조 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5조의6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 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,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